

상에서 제외²⁶⁾하도록 하였으며, 가산세 면제는 직권으로도 가능하나, 과세관청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가산세 면제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그 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영 제13조의3의에서 신청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다.

가산세의 경우는 부칙에서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2001.1.1이후 가산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면 될 것이다.

4) 결손처분 취소범위의 명확화(법제30조의3)

지방세 체납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미비되어 있어 세정운영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결손처분을 한 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새로이 생겼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5) 지방교육세의 이의신청(법제73조)

지방교육세가 도세로 신설됨에 따라 도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의 이의신청은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의 이의신청은 시장·군수에게 하도록 규정하였다.

6) 재개발사업등 승계조합원에 대한 과세의 합리적 개선(법제109조제3항)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환지에 대한 규정을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

25) 예를 들면 취득세의 가산세는 취득세가 된다.

26) 국세의 경우도 국세기본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본세에 포함하며,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